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24.6.13)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전에 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용지의 용도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허용하고, 문화유산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2.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 3.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